

## 제품공급에 관한 일반조건 [테사테이프코리아]

(April 2026)

### 1. 범위

본 제품공급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본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와 관련하여 테사테이프코리아(유)(이하 “테사”라 한다)와 고객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일체의 법적 관계에 적용된다. 고객은 발주시점 또는 늦어도 계약제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본 일반조건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이 본 일반조건과 상충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변경하는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테사와 관련하여 그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테사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2. 계약의 청약 및 체결

- 2.1. 테사의 견적 또는 판매제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고객의 발주(청약)는 테사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 주 동안 고객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테사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주문확인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내용은 주문확인내역, 별도의 계약 또는 본 일반조건에 의해서만 규율되며, 구두합의나 약정은 테사가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메일은 본 제 2.1 조상의 서면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2.2. 테사의 주문확인서가 원 주문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고객이 그 주문확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주문확인서의 내용대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 3. 납품기간과 납품일

- 3.1. 고객의 발주서에 명시된 납품일과 납품기간은 테사가 서면으로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고객은 적시에 제품을 납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품질규격, 승인된 계획, 서류, 허가 등을 테사 측에 알리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협상된 선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납품기간은 계약 확인일이나 주문 수락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후 제품을 추가 또는 확대하여 발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도 연장된다.
- 3.2.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거나 테사의 통제를 벗어나며 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천재지변, 전쟁, 자연재해, 파업, 공장폐쇄, 공장 및 시설의 점거, 정부조치, 에너지·원재료 부족, 화재·폭발로 인한 손해, 운송·운영상의 문제, 주권행위(합법/위법에 상관없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테사는 상기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적시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며 협상된 납품기간은 동 사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테사는 고객에게 교란사유의 발생 및 종료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테사는 제 3 자로부터 대체품을 조달하여 공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가 언제 해결될지 예측할 수 없거나 2 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사유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납품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3. 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원재료 및 공급업체의 부품으로 계약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테사의 고객에 대한 납품의무는 위 각 공급업체가 해당 재료 및 부품을 테사에게 적시에 납품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3.4. 테사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동 지연이 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고객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5. 고객이 제품을 수락하지 않거나 기타 이행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테사는 기타 권리를 불문하고, (i) 고객의 위험과 비용으로 계약제품을 보관하거나 (ii)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3.6. 테사는 일부(분할) 납품을 할 수 있다. 단, (i) 고객은 계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일부(분할) 납품을 이용할 수 있고, (ii) 나머지 발주 계약제품의 납품이 확보되어야 하며, (iii) 고객이 상당한 추가 노력 또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7. 테사가 본 일반조건 제 4 조에 따라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한, 테사는 항공화물운송이나 이와 유사한 급행운송수단을 통해 계약제품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고객이 항공화물운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반 비용은 모두 고객에게 청구된다.

### 4. 최소 주문액과 수량, 운송, 포장, 위험부담의 이전, 부가가치 서비스

4.1. 일반적으로 최소 주문액은 500,000 원으로 한다. 최소 주문액 요건이 충족되고 상기 제 2.1 조 또는 2.2 조에 따라 테사가 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테사는 화물 및 운송비를 부담한다(단, 제 3.7 조에 따라 고객이 항공화물운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반 비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한다). 고객이 (i) 위 최소 주문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ii) 아래 최소 주문수량을 충족한 경우로서, 테사가 정당한 예외사항으로 그 주문을 수락하여 계약제품이 납품되는 경우, 고객은 50,000 원 상당의 최소 화물/운송비 중 안분비례한 비용을 부담한다. 배송번호(delivery number)별 최소 주문수량은 한 포장(one package) 단위이며 (i) 위 최소 주문액 및 (ii) 위 최소 주문수량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테사가 정당한 예외사항으로 그 주문을 수락하여 계약제품이 납품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계약제품을 수령해 가거나 테사가 배송 시 그 비용을 모두 고객사가 부담한다.

4.2. 계약제품은 테사의 일반적인 포장방식으로 배송된다.

4.3. 계약제품이 운송회사에 인도된 시점 또는 직접 수거의 경우 고객에게 인계된 시점부터 계약제품에 대한 우발적 손상 및 우발적 손상의 위험이 고객에게 이전된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그 위험부담은 계약제품의 배송이 가능함을 통지한 날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

## 제품공급에 관한 일반조건 [테사테이프코리아]

(April 2026)

- 4.4. 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약제품은 부가가치 서비스("VAS") 비용을 제외한다. 고객이 창고, 운송 또는 관리 자원이 필요한 VAS 를 요청하는 경우, 테사는 이러한 비용을 고객에게 할당할 권리를 보유한다.
  - 4.5. VAS 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재적치, 재포장, 라벨링, 보관 기간 연장, 문서화, 배송 통지, 특정 기간 내 배송, 긴급 주문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
- ### 5. 대금 및 지급조건
- 5.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계약은 주문 수락일 현재 유효한 가격과 할인율을 기준으로 한다.
  - 5.2. 테사의 모든 가격은 원화로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 5.3. 테사는 제 3.6 조에서 따라 부분 납품분에 대한 부분 청구서를 발급할 수 있다.
  - 5.4. 대금은 각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일체의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대금이 아직 테사가 이를 현실로 수령(인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5.5. 고객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테사는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 손해가 있는 경우 동 추가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5.6. 고객은 자신이 보유한 반대채권이 다툼이 없거나,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거나, 관련 납품과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상계권 또는 동 채권을 근거로 지급을 유보할 권리를 가진다.
  - 5.7. 계약 체결 후 고객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 테사는 선지급이나 지급보증 증권을 받을 때까지 납품을 거절할 수 있다.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이나 지급보증 증권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테사는 선지급이나 지급보증 증권이 제공되는 시점까지 납품을 중단하거나 개별 계약이나 모든 관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테사의 여타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 6. 소유권 유보
- 6.1.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테사가 청구한 모든 대금이 완납된 시점까지 계약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테사에게 유보된다.
  - 6.2. 테사와 고객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이처럼 유보된 소유권은 미수금 잔액에 대한 테사의 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6.3. 고객은 소유권 유보의 대상인 계약제품("유보대상 제품")을 통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만 판매할 수 있다. 고객은 유보대상 제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담보로서 이전하거나 기타 테사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6.4. 고객은 테사 측에 유보대상 제품에 대한 모든 요구된 정보를 항상 제공한다. 유보대상 제품에 대한 제 3 자의 개입이나 청구권이 있는 경우 고객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를 테사 측에 알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객은 제 3 자(들)에게 테사가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고객은 그러한 개입과 청구를 방어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 6.5. 고객은 유보대상제품의 소유권이 테사에 유보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보대상 제품을 테사의 재산으로 별도 표기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취급해야 한다.
  - 6.6. 담보의 실현가능한 가액이 테사의 전체 피담보 채권액을 10% 이상의 차이로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초과분에 한하여 소유권 유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6.7. 고객이 테사와 관련하여 지급의무 등 주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테사는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테사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테사는 유보대상 제품을 반환받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보대상 제품에 대한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은 즉시 테사나 테사의 대리인에게 유보대상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 ### 7. 품질, 하자 발생 시 고객의 권리, 검수 의무 및 문제 제기
- 7.1. 계약제품에 대하여 합의된 품질은 테사의 표준제품명세서 및 제품 지정표시(product designations)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성질, 특성, 성능 특징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구체적인 서면 합의(이하 "품질 합의서"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테사는 계약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특정 용도의 목적으로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보장을 하지 않는다. 품질합의서에 부합하는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특정 목적 및 사용에 적합하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 7.2. 고객이 작성하거나 제시한 품질 명세서, 계획, 스케치, 도면 등 (이하 "품질사양"라고 한다)에 따라 생산된 계약제품의 경우, 품질은 그 제시된 품질사양 및 기타 당사자들 간의 품질합의를 기준으로 해서만 판단된다. 고객이 제시한 품질사양에 근거하는 계약제품의 특징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은 이와 관련하여 테사를 상대로 어떠한 보증 클레임도 제기할 수 없다. 특히, 고객이 작성하고 테사에 전달한 모든 품질사양 및 그에 대한 보충사항의 정확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 제품공급에 관한 일반조건 [테사테이프코리아]

(April 2026)

- 7.3. 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카탈로그, 가격표 및 기타 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제품명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의 특정 품질에 대한 보증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품질보증은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되어야 한다.
  - 7.4. 주문량의 10% 내의 상업적으로 통상적인 수량 및 중량 차이는 허용된다. 상품의 상업적으로 통상적인 품질 및 특성의 차이 역시 허용된다.
  - 7.5.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가능한 한, 고객은 인수 직후 계약제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고객은 배송 즉시 계약제품의 외부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실 또는 손상이 있다면 이를 운송업자에게 알린다. 기타 계약제품의 즉시 검사 시 인식가능한 명백한 하자(계약제품 자체가 품질 합의를 등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및 제품이 고객이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는 테사가 제품 인도 후 7 일 이내에 송장 또는 주문 번호를 기재한 하자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숨은 하자가 있는 계약제품은 하자가 명백해진 시점으로부터 7 일 이내에 테사가 고객으로부터 하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7.6. 하자 통지를 받으면, 테사는 문제가 되는 계약제품을 조사하고 테스트할 권리가 있다. 고객은 테사에게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기회를 주어야 한다. 테사는 고객에게 테사의 비용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7.7. 테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른 선택으로 무상으로 하자를 수리하거나 하자가 없는 제품을 대체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총칭하여 "보충이행"이라 한다).
  - 7.8. 보충이행을 위해 필요한 운송비, 이동비, 인건비 및 재료비는 테사가 부담한다. 하자 통지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에 대한 표시를 간과하고 하자통지를 제출한 경우, 고객은 제반 비용 및 손해(예: 이동 및 운송비용)에 대해 테사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 7.9. 보충이행이 실패하거나, 즉,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지연이 있는 경우, 또는 테사가 보충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법률 규정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매가격을 감액 및/또 제 8 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고객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7.10. 하자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고객의 계약제품 인수 기준으로 12 개월간 유효하다. 그러나 테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야기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상 손해 및 그 밖의 중대한 과실과 고의로 유발된 손해에 기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정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8. 책임 및 손해배상
    - 8.1. 경과실로 인한 주요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테사의 책임은 계약상 통상적이고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제한된다. 주요한 계약상 의무란 계약의 내용 및 목적상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할 고객의 법적 지위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의무 및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의무, 고객이 통상적으로 해당 의무의 준수를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한다.
    - 8.2. 테사는 제 8.1 조에 명시된 의무를 제외한 계약상 의무를 경과실로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8.3. 이 외에 고객의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달리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테사는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8.4. 상기 제 8.1 조 및 제 8.2 조의 책임 제한은 강행적 법적 책임(특히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 테사에 의한 신체상 가해, 테사가 제공한 보장 및 하자의 허위 은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8.5.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증거자료를 테사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약관 등에 명시된 계약상 위약금 및/또는 일시금배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본 일반조건 제 1 조 참조).
  9. 고객의 면책의무
 

고객이 계약제품을 재판매할 시, 책임을 발생시킨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테사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청구 또는 제 3 자에 의한 기타 청구로부터 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10.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하자
    - 10.1. 테사가 아는 한, 체결된 계약의 취지 및 조건에 따라 계약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의, 최종적으로 확정선고된 제 3 자의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조항 및 계약에 따른 계약제품의 사용을 통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 3 자의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고객의 추후 사용을 위한 권리를 확보하거나 고객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제품을 수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권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면 고객과 테사는 각각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테사는 다름 없거나 법적으로 확립된 제 3 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제 8 조의 한도 내에서 고객을 면책하여야 한다.

## 제품공급에 관한 일반조건 [테사테이프코리아]

(April 2026)

- 10.3. 규정된 계약의 취지 및 조건에 따라 납품된 계약제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제 3 자가 고객에게 이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청구를 한 경우, 또는 제 3 자가 고객에게 고객의 권리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테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고객이 계약제품을 정해진 의도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그 밖의 경위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러한 경우, 테사가 기존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테사가 납품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테사가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 10.4. 제 10.3 조에 명시된 것과 같은 고객에 대한 제 3 자의 개입이 있을 경우, 테사는 최선을 다하여 제 3 자와 관련된 해당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고객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제 3 자에게 테사에 해가 되는 진술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 고객의 시험 절차
- 고객 또는 고객의 고객사가 진행하는 시험 절차에 대한 비용은 테사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된다.
- ### 12. 일반조항, 행동강령(Code of Conduct)
- 12.1. 고객은 테사의 서면 동의 없이도 테사에 대한 청구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12.2. 테사와 고객 간의 계약상 합의 및 본 일반조건 및 부수계약(side-agreements)의 변경이나 수정은 서면형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서면형식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2.3. 본 일반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면양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통신수단을 사용한 전송, 특히 팩스나 이메일 방식으로 충분하다.
- 12.4. 테사와 고객 간의 계약상 합의 및 본 일반조건의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경우 무효인 조항을, 해당 조항의 상업적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 12.5. 모든 상호청구의 이행장소는 테사의 등록된 본점소재지이다.
- 12.6. 계약상의 관계에 따른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단, 테사는 여타 법정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12.7. 본 일반조건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2.8. 고객은 테사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의 내용은 <https://www.tesa.com/en/about-tesa/sustainability/our-guidelines-and-standards> (tes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 테사® 제품의 품질은, 최고 수준의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권고는 당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사는 테사와 고객 간에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되지 않은 테사® 제품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질, 특징 및 성능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테사® 제품이 특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고객의 사용 형태를 결정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의 기술담당 직원이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